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5-415
----------	-------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 (안 제13조)

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16조의2)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체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기간 : 2009. 12. 14 ~ 2010. 1. 4. (20일간)
- 결과 : 의견없음

☐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행안부 관련 공문 사본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소관실과		세무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세무과장 주성현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시세담당 정우상 (☎860-220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